

o 분석

- 도메인이름 등록기관은 도메인이름 분쟁은 사이버스쿼터의 문제라는 방관적 자세에서 탈피하여 분쟁의 최소화를 위한 사전적, 사후적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 요구됨
- 도메인이름 등록기관은 등록 및 등록이전 업무처리에 있어서 공정성을 유지하고 합리적 주의의무를 다할 것이 요구됨

## 통신위, 1.25 인터넷대란 일부배상 결정

o 주요 내용

- 지난 1월 25일 발생한 인터넷침해사고와 관련하여, 통신위원회는 10월 13일 제94차 위원회를 열고 녹색소비자연대가 신청인 23명을 대리해 KT·하나로통신·두루넷·온세통신 등을 대상으로 신청한 손해배상 재정건을 의결하였음
- 이 날 결정의 내용은 손해배상을 요구한 23명 모두에게 이들이 이용하지 못한 서비스중단시간에 상응하는 요금을 배상하도록 한 것이며, 손해배상 재정신청인에 대한 실질적 배상금은 1인당 130원~300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됨
- 하지만 사고 당시 가입자 1,130만명이 일시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부담해야 할 총액은 3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참여연대 등이 법원에 별도 소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커다란 과문이 예상됨
- 통신위원회측은 일반적인 장애의 경우 서비스중단시간의 최고 3배까지 배상하도록 약관에 규정되어 있지만 이번 사고는 외국에서 발생되어 국내 사업자들만의 책임이라 보기 어려운 만큼 당일 오후 6시 14분부터 7시 35분까지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여 실제 서비스중단시간에 대해서만 고려하고, 통신사업자 4개사가 면책요건인

불가항력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이 일부 배상결정을 내렸다고 밝힘

- 더욱이 참여연대가 제기한 소송은 인터넷침해사고에 대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ISP들은 물론 정부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인데다 MS에 대하여는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하여 소프트웨어의 제조결함에 따른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통신위원회의 배상결정이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과 통신사업자 및 소프트웨어업계에의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임
- 한편 통신위원회의 배상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신사업자들은 60일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법정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o 분석

- 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대부분의 입증자료가 피신청인인 ISP측에 있어 신청인들이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개연성으로 추정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움은 법리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됨
- 손해배상범위의 산정에 있어 인터넷망의 구조적 특성이 피신청인의 책임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인터넷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하여 ISP측에 대한 과도한 책임부담이 요금인상으로 연결되어 결국 이용자의 피해로 귀착될 우려가 있음에 대해 정책적으로 고려하였음은 통신위원회의 적절한 권한행사로 받아들여짐
- 본 손해배상 재정신청사건에서 녹색소비자연대와 ISP측이 제출한 문건이 참여연대가 제기한 소송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MS를 상대로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됨

## [참조기사]

- [1] 2003년 10월 14일자 대한매일 11면 기사
- [2] 2003년 10월 13일자 통신위원회 보도자료